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최현철

전화 02-3219-4420 / 팩스 02-3219-2397

보도자료

2024. 8. 22.(목)

「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사건」 수사 결과 - 엔터테인먼트 회사 前 대표이사 및 임원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甲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A와 투자전략부부장 B가 甲社로 하여금 B 소유의 부실 드라마제작사 乙社를 고가에 인수하게 함으로써, B는 319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A는 그에 대한 대가로 B로부터 총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A와 B를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A와 B는 甲社로 하여금 '17. 2. 설립 후 아무런 매출이 없던 乙社를 거액에 인수하게 하기 위해 '19. 4.경부터 甲社 자금 337억 원을 乙社에 투입하고 그 자금 중 일부로 작가·PD 등을 영입한 후, 甲社에서 乙社 지분을 400억 원이라는 고가에 인수하게 하였음
 - A와 B는 그 과정에서 ① 乙社가 B 소유인 사실을 甲社 내부에 숨겨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②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고가의 인수가액을 결정하였으며, ③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수 과정 중간에 제3의 업체를 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음
 - A는 B로부터 乙社 인수를 도와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B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였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 본건은 드라마·영화제작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대기업 계열사 경영진이 회사 내 지위를 악용하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후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안임
-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불법적인 사익추구를 위한 기업 임원진의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I

피고인

- A (62세, 甲엔터테인먼트 前 대표이사)
- B (49세, 甲엔터테인먼트 前 투자전략부문장 / 乙社 실소유주)

II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공모 내용) '17. 2. 설립 후 매출이 전혀 없고, 사무실·직원도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던 드라마제작사 乙社가 사실은 B가 실소유한 회사라는 사실을 甲社 내부에 숨기고, 피해자 甲社 자금을 투입하여 작가·PD 등을 영입한 다음 甲社가 乙社를 고가에 인수하기로 공모하였음
- (범죄 사실) ① '19. 4. ~ 9. 甲社에서 乙社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합계 337억 원을 지급하고, 乙社는 그 중 일부로 작가·PD 등 영입 → ② '19. 11. 28. 丙社로 하여금 乙社를 400억 원에 인수하게 함 → ③ '20. 3. ~ 5. 甲社가 丙社로부터 乙社를 400억 원에 인수함
- (이익 및 손해) B는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3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甲社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

※ S대 로스쿨 C교수의 자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甲社가 乙社에 지급한 총 금액(737억원)에서 ▲작가·PD 등 영입에 지출된 금액(257억원), ▲乙社 설립 자본금(1억원), ▲甲社의 乙社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금 및 乙社 운영자금(160억원) 등을 공제한 금액

나.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 B가 A에게 乙社 인수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A에게 건넨 다음, '19. 12. ~ '23. 7.까지 A가 합계 12억 5,646만 원을 사용함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위 사항과 같이 B가 乙社 인수 관련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A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건네고 A가 이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17. 2. 乙社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5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부동산 매입·대출금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함

III 수사 경과

● '23. 11. 22. 甲社, A 및 B 주거지 등 압수수색

● '24. 1. ~ 2. 甲社 관계자, A 및 B 등 조사

● '24. 2. 1. A 및 B 구속영장 기각

※ 기각 사유 : 손해액 등 다툼 여지 있고, 객관적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음

● '24. 2. ~ 3. 甲社 관계자 조사 등 보완수사

● '24. 3. 21. A 및 B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 기각 사유 : 피해회사 손실 및 규모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 있음

● '24. 8. 22. A 및 B 각 불구속 기소

IV 수사 결과

최고 경영자와 임원이 결탁하여 회사 자금으로 거액의 사익 추구

● 대기업 계열사인 甲社의 대표이사 A와 투자전략부문장인 B가 결탁하여 B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 드라마제작사 乙社를 甲社가 고가로 인수해주고,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B가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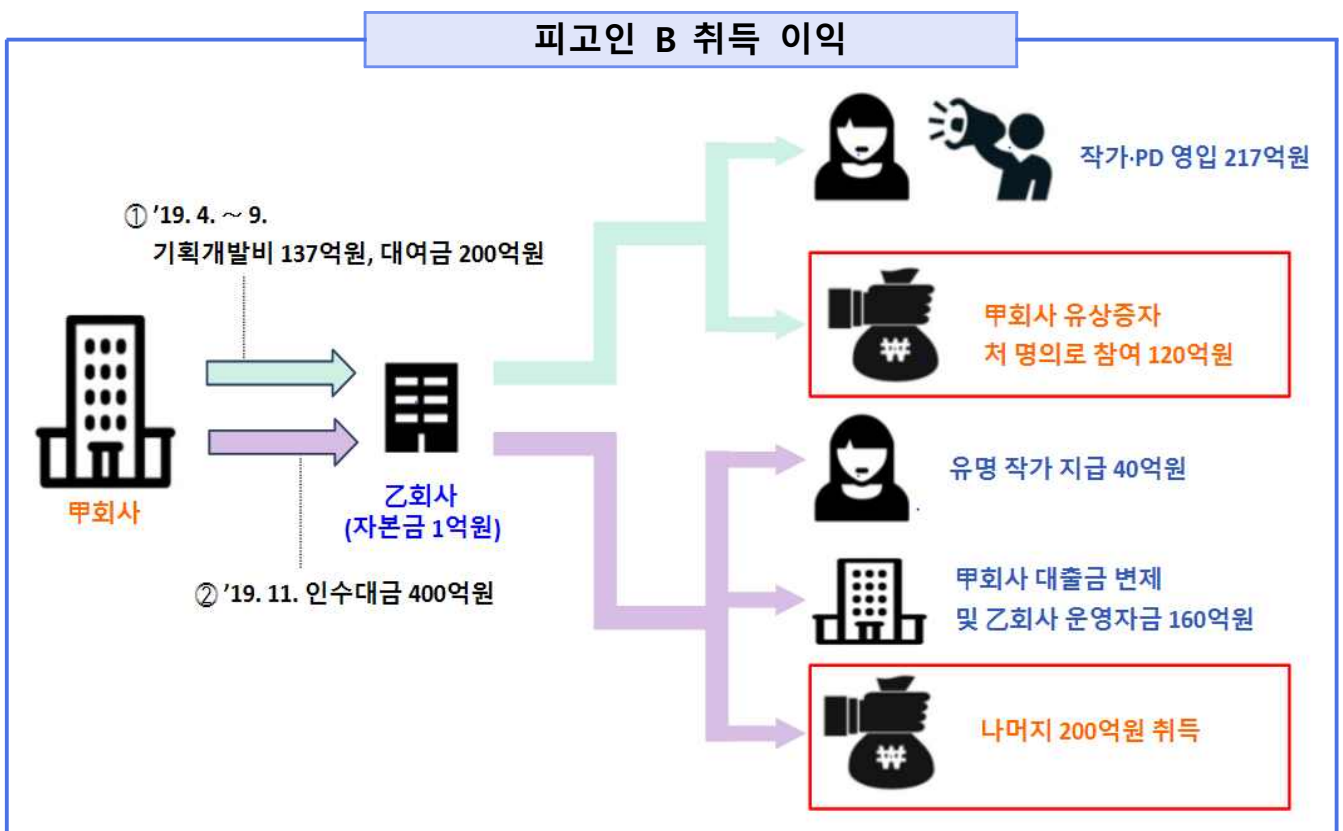
- 乙社は '17. 2. 설립 후 인적·물적 시설이 없어 제작활동이 전무하였고 설립 후 3년간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였음에도, 乙社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甲社 資금을 투입하고 그 자금 중 일부로 작가와 PD 등을 영입하였음

※ 甲社로부터 지급받은 기획개발비 137억원, 대여금 200억원 등 합계 337억원 중 작가 및 PD 등 영입에 217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0억원은 B가 처 명의로 甲社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개인적 이익 취득

- 이후 제대로 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나 가치평가 없이 임의로 乙社 인수 가액을 400억 원이라는 고가로 결정하여 B는 거액의 이익 취득

※ B는 인수대금 중 40억원은 유명 작가에게 지급하고, 160억원은 甲社에 대한 乙社의 변제금 및 乙社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나머지 200억원의 이익 취득

● 결국, B는 1억 원의 비용을 들여 乙社를 설립한 후 자신이 소속된 甲社로 하여금 737억 원의 돈을 들여 乙社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설립 비용 1억 원을 제외하고 319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였음



특수관계자 거래를 적극 은폐

- 피고인들은 B가 乙社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甲社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와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인 丙社로 하여금 乙社를 먼저 인수하게 한 후 다시 甲社가 丙社로부터 乙社를 인수하는 방법을 사용
 - 甲社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위 丙社 임원들조차도 B가 乙社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甲社에서 다시 사갈 것이니 乙社를 잠시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社를 인수하였음
- 甲社 윤리규정상 임직원은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경우 회사와 거래가 금지되고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내부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은 채 투자 및 인수를 진행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였음

범죄수익을 장기간 은밀히 분배하여 명품 등 구입

- B는 범행으로 취득한 거액의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乙社에 대한 자금지원 및 乙社 인수를 최종 결재한 대표이사 A에게 범행에 대한 대가로 B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고, A는 위 돈으로 미술품·다이아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B는 乙社 인수대금을 받은 직후인 '19. 12.경 B 명의 계좌 2개를 신규 개설하며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았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A에게 건넨 후 위 계좌에 합계 18억 원을 입금
 - A는 B명의 통장 2개를 A의 지문으로만 열 수 있는 금고에 은밀히 보관하며, '19. 12.부터 '23. 7.까지 합계 12억 5,646만 원을 사용하여 B로부터 월평균 2,850만 원을 수수
- 범행을 도와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위와 같은 교묘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건 수사로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면서 A의 카드사용 및 B의 대가지급이 중단되었음

V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본건은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위 임원이 소유한 부실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다음 범행을 통해 취득한 거액의 이익을 상호 분배한 사안으로,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규명하였음
- 향후에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하여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